



유럽의회, EU 삼림 벌채 규정 (EUDR) 최종 채택

- 규제품목(파생상품 포함)에 대한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화 -

2023년 4월 유럽의회는 삼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EU)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U 삼림 규정")」의 채택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552표, 반대 44표, 기권 43표로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본 규정의 채택으로 삼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고무,목재 등 주요 상품의 역내 수입·판매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EU 삼림 규정의 등장 배경

EU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삼림 벌채와 관련된 전세계 농산물 거래량의 3분의 1을 수입하였으며, 전세계 삼림 벌채 관련 제품의 10%를 소비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발간된 산림 정책 무역 및 금융 이니셔티브(Forest Policy Trade and Finance Initiativ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과 2019년 사이에 열대 국가에서 상업적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삼림 벌채의 약 30%가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도 EU를 비롯한 각 국에는 불법 삼림 벌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내지 제도가 존재하였으나,¹ 삼림 벌채의 합법성에만 초점을 두는 규제는 삼림 벌채 지역의 확대 방지에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유럽연합은 본 규정의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EU는 삼림 벌채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및 제품에 관하여 삼림 벌채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삼림에서 새로이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EU 삼림 규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2. EU 삼림 규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규제 품목을 역내 시장에 수입하여 생산, 판매, 수출하는 역내기업에 대해 적용되는데, 역내기업은 운영자(Operator)와 거래자(Trader)으로 분류됩니다. 운영자(Operator)는 상업적 활동으로 관련 제품을 EU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EU 밖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EU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이 있는 수입업자는 Operator로 간주됩니다. 거래자(Trader)는 위 상업적 활동에서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제공하는 공급망에 속한 Operator 외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시장에서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¹유럽연합의 경우 2013년부터 EU목재규정(EU Timber Regulation)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2) 규제 품목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총 7개 농산품이며, 이를 사용해 생산된 초콜릿, 가구, 인쇄된 종이 제품, 숯 등의 파생 제품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파생상품의 목록은 본 규정 [부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산림전용 규정 대상 품목 개요>

농산	파생상품
소고기	냉장·냉동 소고기, 소가죽 및 가죽제품
코코아	코코아 원두,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버터파우더 및 초콜릿 등
커피	커피
팜유	팜유, 팜너트, 바바수유, 고품제품
대두	대두, 대두유, 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 등
목재	통나무, 합판, 목재프레임, 목재 가구 등 목재 제품 전반
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고무끈, 고무 타이어, 기타 고무 제품

(표 정리 출처: [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통상·규제](#))

(3) 규제품목 실사 의무

규제 품목의 EU 시장 출시를 위해서 운전자(및 거래자)는 산림 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관련 내용을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내기업은 기업정보, 상품명, 수량, 상품 및 원자재의 원산지 국가 및 지리정보, 인권 및 생산지 주민의 권리 보호 여부, 부패방지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실사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내기업은 규제 품목이 2020. 1. 31. 이후 산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으며, 원산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하고 이를 확인하는 보고서 및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실사 범위는 해당 제품 및 원자재를 경작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합니다. 만약 관련 제품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U 27개국 역내 전역에서 상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며,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역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및 해당 업체의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실사 관련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

EU집행위는 법안 발효 후 18개월 동안 산림 훼손 가능성 및 산림 보호 정책 시행 여부 등을 기반으로 든 전 세계 국가를 3단계(저위험·표준위험·고위험)로 구분하고, 고위험 국가의 경우 강화된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하며, 저위험 국가의 경우 보다 간소화된 실사의무를 부과하는 등 단계에 따라 차등한 실사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가 위험도별 차등 의무>

위험도	의무
저위험	기업에 간소화된 실사 의무가 부과되며, 관할 당국은 관련 사업자 최소 1%에 대해 검사 수행해야 함
표준위험	관할 당국은 관련 사업자 최소 3%에 대해 검사 수행해야 함
고위험	관할 당국은 관련 사업자 최소 9%에 대해 검사 수행해야 함

3.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EU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세계최초로 산림 벌채와 관련한 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본 규정은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급망 실사법 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2023. 4. 19. EU 의회에서 본 규정의 채택이 가결되었으며, 이사회 승인 및 EU공식 관보 게재를 거쳐 게재일로부터 20일 이후 발효됩니다. 규정의 발효 12개월 내 1차 법안 영향평가 및 검토가 이뤄지며 18개월 이내 EU 집행위는 위임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규정 발효 이후 대기업만이 우선적인 의무 보고 대상이나, 중견기업은 18개월, 영세·소기업은 24개월 이후 실사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규정은 역내 기업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역내기업의 실사 선언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 및 생산 공법 등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규정의 내용과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수출제품 원자재의 원산지, 산림 벌채 등 용도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e@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T. (+82) 2 6182 8716

E. hsryu@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